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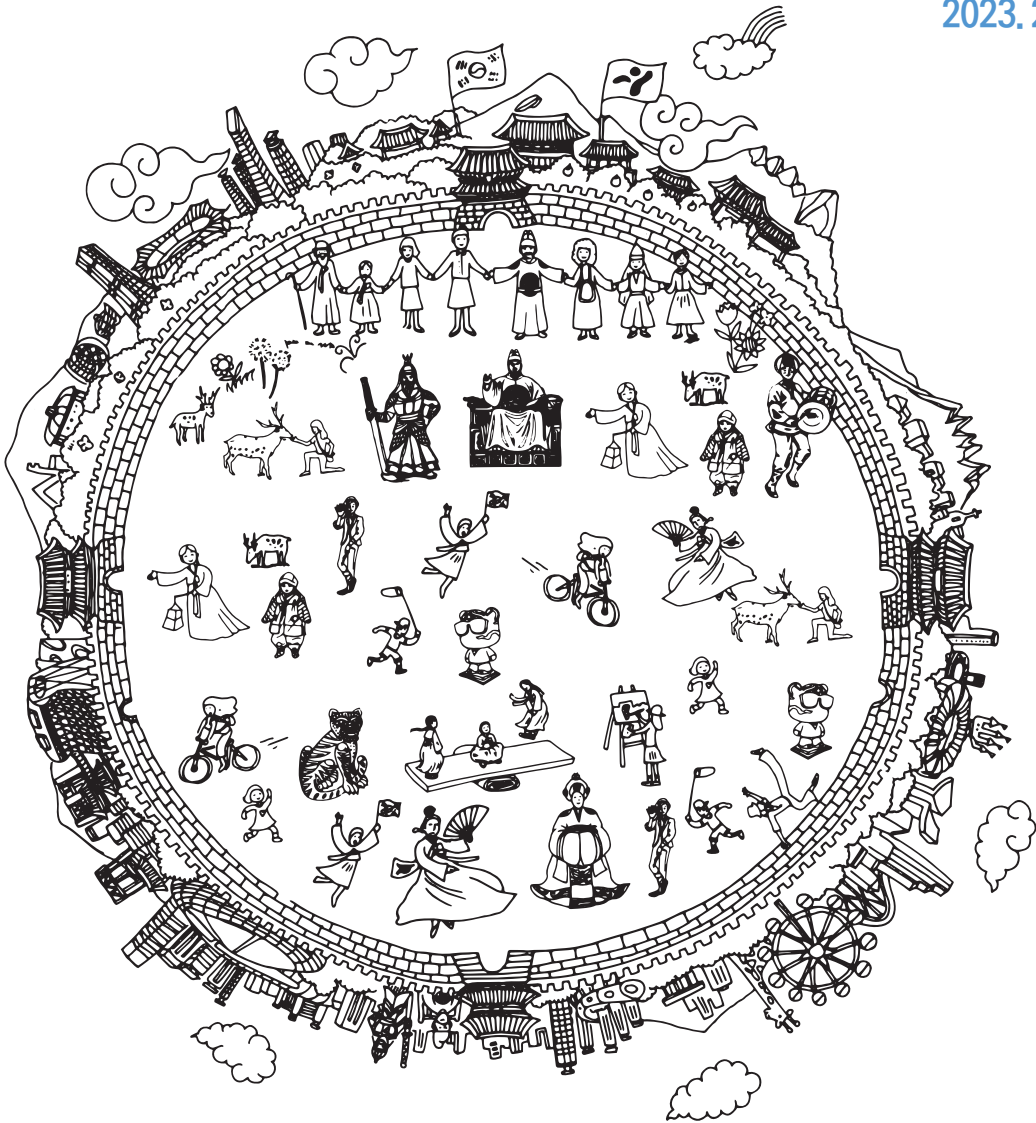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51호
2023. 2. 6.(월)



목 차◆ **자치법규****[규 칙]**

제454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454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

자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54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2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정연구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연구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으로 하며, 제7항 “시정연구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0호로 하고, 제1호부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창의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창의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 확산
3. 창의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서울창의상 운영

제11조제1항 중 “국제협력과·캠퍼스타운활성화과·전략산업기반과”를 “캠퍼스타운활성화과·전략산업기반과·국제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제협력과장·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은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국제협력과장”으로 하며, 제3항 중 “제11항”을 “제10항”까지로 하고, 제4항 중 “신산업 관련”을 “국제협력 및 신산업 관련”으로 하며, 제10항은 제12항으로, 제11항은 제10항으로, 제12항은 제11항으로 한다.

제17조의3제6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직장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부서 신설 및 편제 변경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 내 시정연구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 으로 재편·신설(제10조제7항)

- 창의행정을 市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조정실 내 시정연구담당관을 창의행정 전담조직으로 재편·신설
- 홍보기획관 내 뉴디미어담당관의 ‘서울 창의상 운영’ 업무 이관
- 행정국 내 인력개발과의 ‘직원학습조직 운영 및 성과 확산’ 업무 이관

나. 경제정책실 내 국제협력과를 경제일자리기획관 산하에서 경제정책실장 직속으로 편제(제11조제12항)

- 국제 협력기능 강화 및 신속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경제정책실장 직속으로 편제

◆ 서울특별시규칙 제454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5급 소계란, 행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470	980	51	58	334	47
행정	679	491	47	24	75	42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사서란, 시설란, 토목운영란, 통신운영란, 사무 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573	1,886	174	106	1,303	104
행정	1,385	874	144	40	253	74

사서	19		1	7	11	
----	----	--	---	---	----	--

시설	578	325	3	2	230	18
----	-----	-----	---	---	-----	----

토목운영	3				3	
------	---	--	--	--	---	--

통신운영	15	5	1	2	7	
------	----	---	---	---	---	--

사무운영	24	6	1	1	15	1
------	----	---	---	---	----	---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사서란,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440	1,369	124	145	1,741	61
행정	1,281	698	91	59	386	47

사서	22	1	1	8	12	
----	----	---	---	---	----	--

기계운영	64	4	1		59	
------	----	---	---	--	----	--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녹지란, 기계운영란,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178	162	44	70	899	3
행정	133	29	13	16	73	2

행정또는시설	14	4			10	
--------	----	---	--	--	----	--

행정또는녹지	2				2	
--------	---	--	--	--	---	--

기계운영	65	2		1	62	
------	----	---	--	---	----	--

사무운영	143	42	13	18	69	1
------	-----	----	----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행정수요 증가 분야 대응 등에 따라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수요 증가분야 대응을 위해 직렬·직급 간 정원 조정

- 행정 또는 시설8급 △1, 행정 또는 녹지8급 △1, 행정8급 △10

→ 행정5급 +1, 사서6급 +1, 시설6급 +1, 행정6급 +8, 사서7급 +1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